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93

발의연월일: 2022. 5. 4.

발 의 자:노웅래·고영인·김정호

서삼석 · 신정훈 · 양정숙

윤준병 • 아주진비 • 이해식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함.

그런데,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제정으로 한국환경공단은 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2050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는 등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이행 추진을 공단의 설립목적에 명확히 하고 공단에서 현재 수행하는 사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탄소중립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이행 추진"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 조).
- 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등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을 법에 반영하여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자함(안 제17조).
- 다. 한국환경공단의 출자·출연 근거 조항은 있으나,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출자·출연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부재하므로 효과적이고 유연한 기관 운영을 위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

법률 제 호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의2, 제20호의3 및 제2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제20호까지"를 "제20호까지 및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로 한다.

- 1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사회 이행 정책지원 사업
- 14. 녹색기술·녹색산업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 20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신청서류등의 기술검토 및 통합관리사업장 배출시설등에 대한 기 술지원
- 20의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20의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7조의 사업을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 제1조(목적) -----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 • 환경개선 · 자원순환촉진 및 기 -----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 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 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 | 축사업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이 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 행을 효과적으로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제17조(사업) ① -----호의 사업을 한다.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 1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 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 가스 감축사업 등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사회 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 원 사업 이행 정책지원 사업 13. 삭 제 14.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 14. 녹색기술ㆍ녹색산업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및 단지 조성・운영,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15. ~ 20. (현행과 같음) 15. ~ 20. (생략) 20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신 설>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신청서류등의 기술검

토 및 통합관리사업장 배출시

<신 설>

<신 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 📗 업을 위한 조사·측량, 시험· 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 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 감독・감리

22. ~ 25. (생략)

②·③ (생 략)

<신 설>

설등에 대한 기술지원

20의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 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폐 자원관리시설 설치 · 운영 및 주민지원

20의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21. ----- 제20호까지 및 제 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

- 22. ~ 25.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24조(출자 등) ①・② (생 략) 제24조(출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7조의 사업을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